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14
----------	-------

발의연월일 : 2026. 8. 28.

발 의 자 : 김상훈 · 고동진 · 이만희
이상희 · 윤한홍 · 박수영
엄태영 · 임종득 · 조지연
이달희 · 김대식 · 김재섭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12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그 시행시기는 이후 세 차례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국내 중앙화거래소(CEX)가 아닌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 거래(P2P), 탈중앙화금융(DeFi) 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 거래내역을 추적하거나 입증하기 위한 과세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주요국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국제교환체계가 본격 가동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반면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와 국제적 정보교환체계의 정비 상황을 고려하여 과세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제6항 등).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5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29년 1월 1일”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2027년 1월 1일”을 “2029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29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2028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하며, 같은 부칙 제6조 중 “2027년 1월 1일”을 “2029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12조 중 “2028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2호, 같은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부칙 제20조제2항 및 같은 부칙 제22조 중 “2027년 1월 1일”을 각각 “2029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
산) ① ~ ④ (생 략)	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⑤ -----
계산할 때 <u>2027년 1월 1일</u> 전	----- <u>2029년 1월 1일</u> ----
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	-----
산의 취득가액은 <u>2026년 12월</u>	----- <u>2028년 12월</u>
<u>31일</u>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	<u>31일</u> -----
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	-----
으로 한다.	-----.
⑥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	----- <u>2</u>
<u>027년 1월 1일</u> 이후 취득하는	<u>029년 1월 1일</u> -----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	-----
당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가	-----
상자산 전체의 양도에 따른 필	-----
요경비를 그 가상자산 전체의	-----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	-----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
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
수 있다. 이 경우 부대비용은	-----.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생 략)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생 략) 2.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6항·제7항 및 제16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 <u>2027년 1월 1일</u> 3. (생 략) 4.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 제177조의 개정규정: <u>2028년 1월 1일</u>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u>2027년 1월 1일</u> 이후 가상자산을	-----. ⑦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u>2029년 1월 1일</u> 3. (현행과 같음) 4. ----- ----- ----- -----<u>2030년 1월 1일</u>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 ----- -----<u>2029년 1월 1일</u>-----
---	--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757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 6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u>20</u> <u>28년 1월 1일</u>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 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 다. 1. (생략) 2.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 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 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 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 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 조제3호·제4호, 제119조제12 호타목·파목, 제126조제1항	-----.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에 관한 적용례) ----- ----- -----<u>20</u> <u>30년 1월 1일</u>----- ----- ----- --.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제3호, 제127조제1항제6호다 목, 제156조제1항제8호, 제156 조제12항·제16항·제17항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 <u>2027</u> <u>년 1월 1일</u>	----- ----- ----- ----- <u>2029</u> <u>년 1월 1일</u>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 용례) ① 제14조제3항제8호다 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 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 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 제3호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 정은 <u>2027년 1월 1일</u> 이후 가 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 용례) ① ----- ----- ----- ----- ----- ----- ----- ----- ----- <u>2029년 1월 1일</u> ----- ----- -----.
②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u>2027년 1월 1일</u> 이 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 터 적용한다.	② ----- ----- <u>2029년 1월 1일</u> ----- ----- -----.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에 관한 적용례) ① (생 략)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에 관한 적용례) ① (현행과 같

② 제119조제12호타목 및 제1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u>2027년 1월 1일</u>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제16항·제17항의 개정규정은 <u>2027년 1월 1일</u>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음) ② ----- -----<u>2</u> <u>029년 1월 1일</u>----- ----- -----.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 ----- -----<u>2029</u> <u>년 1월 1일</u>----- -----.
---	---